

대구예술대학교 강사임용규정

(제정 2019.07.26. 법인이사회)

(개정 2022.01.10. 교무위원회)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 (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강사의 자격과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강사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서 정한 교원을 말한다.

제3조 (소속 및 책무) ① 강사는 전공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양 및 교직과목만 담당하는 강사는 예외로 한다.

② 강사는 담당교과목의 강의만을 담당한다.

제4조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재직 중인 강사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제5조 (강사심사위원회) ① 강사의 신규채용·재임용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강사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강사심사위원회는 전공주임이 위원장이 되어 구성하며, 채용분야가 2개 이상인 경우 채용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강사심사위원회 위원은 채용 대상전공 및 유사 전공분야의 전임교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강사채용심사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6조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심사위원회는 강사의 임용 등 강사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 2 장 임용

제1절 임면

제7조 (임용권) 강사는 강사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검증·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제8조 (임용기간)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우리 대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사의 임용 이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의 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1.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

2.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제9조 (임용계약) ① 총장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근무 조건, 면직사유, 재임용절차(임용기간 만료사실의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 재임용 조건에 관한 사항 포함) 등 계약조건을 명기하여 임용한다.

② 강사에게는 신규임용일 이후 휴직·정직기간 등을 포함하여 총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되,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채용절차 또는 재임용추천절차에 따른다.(개정 2022.01.10)

제10조 (당연 퇴직)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게 된 때
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제2절 신규임용

제11조 (임용일) 강사의 임용일은 매학기 개강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자격) ① 강사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대학교의 강사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1년 이상 강의 경력자
2. 박사학위과정 1년 이상 수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체능계열 및 기타 실기분야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소지자도 가능하며, 특정 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자와 기타 능력이 인정되는 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후 업무종사경력 2년 이상인 경우 임용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 이후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되면 임용 후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면직시킬 수 있다.

1.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학교법인 세기학원 정관」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만 65세를 초과한 경우
5. 폐강 등의 사유로 담당과목이 없어지고 교내에 대체 강의를 찾기 어려운 경우
6. 논문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7. 기타 사회통념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8. 본 대학교에서 3년의 재임용 절차 보장후 면직된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01.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대학교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신규채용) ① 강사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지원자격심사: 채용후보자의 지원자격(학력, 경력, 전공 요구사항 등) 충족여부
2. 기초심사: 채용후보자의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와의 일치도
3. 전공심사: 채용후보자의 강의실적 및 잠재역량, 학문적 우수성 등
4. 면접심사: 채용후보자의 교육자적 자질 및 열정, 관련 지식수준 및 전문성 등

③ 신규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재임용

제14조 (임용일) 강사의 임용일은 개강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요건) ① 임용기간이 만료된 강사가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강사 재임용 평가표 전공평가항목에서 평점 7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강사 재임용 평가표 면직사유에서는 모두 'P(pass)'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으로 정한 면직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재임용을 하지 않는다.

③ 강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자,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한 자, 교육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강의평가에서 담당과목 평균 점수가 6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절차) ① 총장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강사에 대해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강사에게 통지한다. 다만, 3년의 재임용 절차 보장 기간이 만료되는 강사에 대하여는 1년 단위로 전공별 강사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사위원 2인의 재임용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재임용신청 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단, 1년 단위 재임용 추천 및 신청시 3년 재임용 절차 보장은 제외되며, 재임용 추천이 없거나 심의 미통과시 재임용 신청할 수 없음을 통지한다.(개정 2022.01.10.)

②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강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강사 재임용 신청서(별지1)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재임용 심사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2.01.10.)

③ 강사인사위원회는 강사 재임용 평가표(별지2)에 따라 재임용 심사 평가를 하여야 하며, 재임용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강사 재임용 거부사유서(별지3)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강사인사위원회의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검증·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강사의 재임용 여부를 확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30일 전(심의가 지체되는 경우 20일 전)까지 해당 강사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⑤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총장은 해당 강사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⑥ 재임용이 거부된 강사에게는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제 3 장 복무 및 신분보장

제17조 (신분) ① 강사는 임용과 동시에 소속 기관 교원의 신분을 갖는다.

② 강사는 제4조 및 제21조,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의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임금 등) ① 강사의 임금은 학기 중 임금과 방학 중 임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학기 중 임금은 담당과목의 강의시간에 비례하는 강의료로 지급하되 강의료는 우리 대학교 강의료 지급기준을 따른다.

③ 제2항의 강의료는 담당 교과목의 수업계획서 작성 및 공지, 수강생에 대한 평가와 성적 제출, 담당 교육 분야에 대한 학습 상담 및 지도 등 강의에 부수되는 시간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다.

④ 학기 중 임금은 개강일로부터 계산하여 매 4주간을 강의료 계산기간으로 하며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 당월 분을 지급한다.

⑤ 폐강의 경우에도 강의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강의료를 지급한다.

⑥ 방학 중 임금은 해당학기의 강의를 완료한 강사에게 지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⑦ 학기 중 수강인원 초과강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⑧ 강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개정 2022.01.10.)

⑨ 강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⑩ 강사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19조 (강의시간) ① 강사가 담당하는 주당 강의시간은 학기별로 주당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장 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9시간으로 할 수 있다.

② 계절수업 강의를 위하여 임용 중인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 담당시간은 학기별 담당 강의시간 과는 별도로 한다.

제20조 (근무조건 및 복무)

① 강사는 사립학교법, 교육관계법령 및 우리 대학교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강사는 교내외 활동에 있어서 교원복무규정 제12조에 적용받지 않는다.(개정2022.01.10.)

④ 강사는 수업계획서 작성, 성적평가 및 입력, 교육이수 등 담당 교과목의 학생 교육을 위해 우리 대학교 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강사는 우리 대학교 담당교과목의 학생 교육, 수강생 지도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타 기관의 강의를 담당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소속 전공주임을 경유하여 교무처로 신고하여야 한다.

⑥ 강사는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경력, 학력, 주소 및 주민등록사항 등)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소속 전공과 교무처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강사는 재임용절차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학기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소속 전공주임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 (휴·복직)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총장은 교원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

1. 업무상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강사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6.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5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강사가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5.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총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⑤ 강사의 휴직기간은 신규임용으로부터 재임용 심사 절차가 보장되는 총 3년의 범위를 내에서 허가한다.

제22조 (징계) ① 강사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장은 5명 이상으로 강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2.01.10.)

② 학교법인세기학원 교원징계위원회운영규정 제6조2(징계사유의 시효), 제7조(징계의결의 기한), 제8조(진상조사 및 의견청취), 제9조(의결정족수)를 준용하며, 그 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01.10.)

제23조 (면직)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면직 된다.

1. 사망한 때
2.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달한 때
3.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이 규정에 의거하여 재임용이 거부된 때
5. 총 3년간 보장된 재임용 기간 만료 및 재임용 추천이 없거나 심의미통과로 총장이 면직하고자 할 때(개정 2022.01.10.)
6. 제8조 제2항에 따라 임용된 강사로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
7. 교원의 1년 이상 연구년, 휴직, 보직 임명 등으로 인한 강의대체를 위해 임용된 강사로서, 대상교원 의 연구년 종료, 복직, 보직 종료 등 강의대체 사유가 해소된 때

② 총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강사징계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계약기간 중에도 직을 면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낮은 때
2.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3. 특정 정당지지 또는 반대를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4. 성적평가 시 부정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할 때
5. 허위서류 제출, 연구윤리위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6. 강의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거나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7.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8. 학교법인세기학원 교직원징계양정규정[별표1 징계양정기준]에 해당될 때(개정2022.01.10.)

③ 강사징계위원회는 면직 심의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개정2022.01.10.)

④ 총장과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용계약으로 정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편
 - 가. 교육과정 이수요건이 변경되는 때
 - 나.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개설학점 또는 개설강좌수가 축소·변경되거나 교과목이 폐지되는 때
 - 다. 해당 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모두 폐지·폐강되는 때
2. 전공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 가. 전공 또는 학사조직이 변경 또는 폐지되는 때
 - 나. 전임교원 신규채용으로 담당 교과목 조정이 필요한 때
 - 다. 임용기간 내에 담당 교과목이 모두 폐강·폐지되어 수업을 하지 못한 때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대구예술대학교 시간강사위촉에 관한 규정’은 폐

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강사 재임용 신청서

(개정2022.01.10.)

성명	사번	생년월일	소속
임용기간	최종학력	학위명	전공

<강의실적>

1	소속전공	개설전공	교과목명 :	
			학년 :	수강생 수
2	소속전공	개설전공	교과목명 :	
			학년 :	수강생 수
3	소속전공	개설전공	교과목명 :	
			학년 :	수강생 수
4	소속전공	개설전공	교과목명 :	
			학년 :	수강생 수
5	소속전공	개설전공	교과목명 :	
			학년 :	수강생 수
6	소속전공	개설전공	교과목명 :	
			학년 :	수강생 수

구분	해당사항기술
교육철학	
기타사항	※전공 관련 자격증 보유 등(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

위와 같이 강사 재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대구예술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2)

강사 재임용 심사 평가표

성명		소속	생년월일	사번	
심사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점
전공 평가 항목	수업	1. 수업계획서 입력기간 준수		20점	
		2. 수업평가 점수(전체평균평점 6미만은 점수부여X)		20점	
		3. 성적 입력기간 및 공시기간 준수		20점	
	행정	4. 휴강신고 및 보강준수(미 준수 건당 3점 감점)		20점	
		5. 수업관련 민원 발생 여부(발생 건당 3점 감점)		20점	
소계				100점	
전공 평가 항목	법률에서 정한 면직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69조 제1호에 해당될 때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P/F	
면직 사유 항목	계약에서 정한 면직사유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 성적이 극히 낮을 때 2.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3. 특정 정당지지 또는 반대를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 한 때 4. 성적 평가 시 부정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할 때 5. 허위 서류 제출, 연구윤리 위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 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6. 강의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거나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를 했을 때 7.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때		P/F	

※ 재임용 요건 및 심사방법 (아래 ① ~ ②을 모두 충족 시 요건 충족)

① 전공평가항목 (100점 만점)

강의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기일 후 5일 이내 제출(강좌당)		-5
◦ 기일 후 10일 이내 제출(강좌당)		-7
◦ 미제출(강좌당)		-10
강의평가의 평균 결과(10점만점기준)		10점기준×2
◦ 6점 이하 과목(강좌당)		-10
성적제출		
◦ 기일후 5일 이내 제출(강좌당)		-10
◦ 기일후 10일 이내 제출(강좌당)		-15
◦ 미제출(강좌당)		-20

1. 수업평가와 행정평가 100점 만점으로 점수 부여
 2. 70점 이상 취득 시 최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② 면직사유 (P/F) 법률과 계약으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경우 각 "P"로, 그렇지 않은 경우 각 "F"로 평가

2000년 00월 00일

위원 : _____ (인) 위원: _____ (인) 위원 : _____ (인)
위원 : _____ (인) 위원: _____ (인) 위원 : _____ (인)

강사심사위원회 위원장 : _____ (인)

대구예술대학교 총장 귀하

